

[2025년 변리사 1차시험 해설_산업재산권법]

◆ 2025년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총평

안녕하세요. 김영남 변리사입니다.

올해 산업재산권법은 조문중심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드린 바와 같이, 기본서와 함께 법조문을 꼼꼼히 암기하셨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의 '고득점' 비결은 언제나 법조문입니다.

또한 낱자를 포함하는 사례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사례문제를 접하게 되면, 순간 당황하시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풀이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사례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과 시간을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특허법과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데 바와 같이, 특허법은 20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집합 부분에서 매년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 특허법을 가장 잘 하셔야 합니다.

저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리사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변리사 배상.

문제 (정답)	보기	정오	해설
1 (④)	①	O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특허법 제10조 제2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특허법 제10조 제3항).
	②	O	출원인으로부터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 등본 등 출원 절차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출원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9허22판결).
	③	O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④	X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⑤	O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2 (③)	ㄱ	X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ㄴ	X	의견서는 반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려하지 않는다. 한편,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를 판단하면, 기간의 마지막 날(2025. 1. 28.)이 공휴일이고, 2025. 1. 30일까지도 계속하여 공휴일이므로 2025. 1. 31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기간도 준수하였다.
	ㄷ	X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계산에 넣는다(특허법 제14조 제1호). 따라서 2025. 1. 3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ㄹ	O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219조 제3항).
3 (5)	①	O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②	O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 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특허법 시행령 제3조).
	③	O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④	O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⑤	X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5215 판결).

4 (3)	①	O	특허출원(Y)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Y)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2027. 6. 1. 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O	국내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특허법 제59조 제7항). 최선출원일인 2023. 1. 6. 부터 1년 4개월인 2024년. 10. 1. 까지 국내우선권주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X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제1호). 특허출원(Y)가 출원공개되었으므로, 특허출원(X)의 열람을 허용한다.
	④	O	특허출원(Y) 중 발명 A는 국내우선권주장의 효력으로 인해 판단시점이 2023. 6. 1.로 소급된다. 그리고 그보다 이전인 2023. 4. 1. 발명 A가 공지되었는바, 발명 A는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⑤	O	특허출원(V)의 출원일은 2024. 4. 1. 이고, 특허출원(Y)는 판단시점이 소급되어 2023. 6. 1. 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특허출원(V)는 확대된 선원주의 위반이 된다.
5 (2)	①	O	甲의 특허출원에서 C는 출원일(2023. 6. 1.)부터 선출원의 지위가 있고, A, B, C는 출원일(2023. 6. 1.) 다음날 부터 2024. 12. 1. 중 출원공개된 시점까지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있고, 2024. 12. 1. 중 출원공개된 시점 이후부터는 공지기술의 지위가 있다. 따라서 2023. 7. 1. 일 발명 B를 출원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나, 출원시 출원인이 동일하므로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예외로 본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②	X	丙이 발명 B를 2023. 6. 1.에 출원하면, 甲의 출원과 동일자 출원이므로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O	丁이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④	O	戊이 발명 A를 2023. 6. 1.에 출원하면, 甲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O	출원일(2023. 6. 1.)부터 3년 이내인 2026. 6. 1. 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허법 제59조 제2항). 또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6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다.
6 (3)	①	O	특허법 제30조 제2항, 제3항
	②	O	특허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출원' 은 국내출원만을 의미하므로,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아닌 우리나라 출원을 기준으로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X	공지 등이 된 날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독립된 출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O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공지(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사안의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따른 출원공개이므로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⑤	O	의사에 반한 공지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7 (①)	①	X	신규성 판단은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없고, 공지기술과 출원발명간에 1:1 비교를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O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③	O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④	O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⑤	O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반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8 (⑤)	①	O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 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

			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②	O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③	O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④	O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⑤	X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9 (3)	①	O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

			에 따라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②	O	특허법 제63조의2
	③	X	정보제공이 있더라도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지 않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특허법 제66조의2 제1항).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특허법 제66조의2 제2항).
	⑤	O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6조의2 제3항).
10 (3)	ㄱ	X	수차례가 아닌 한 차례만 영장하 수 있다(특허법 제89조 제1항).
	ㄴ	O	특허법 제89조 제2항
	ㄷ	O	특허법 제91조 제2호
	ㄹ	O	특허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4호 및 제5호
	ㅁ	X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11	①	O	특허법상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

(1)			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 이 경우 그 특허권이 당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X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③	X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96조 제2항).
	④	X	의약품이나 농약은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인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특허법 제104조, 실용신안법 제26조.
12 (1)	①	X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 즉 진실을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다.
	②	O	특허법 제128조 제8항
	③	O	특허법 제126조의2 제2항
	④	O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21 판결
	⑤	O	乙은 甲의 실제손해액이 자신의 이익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추정의 효과를 벗어날 수 있다.
13 (4)	①	X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과 그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의 합의서에 乙이 디자인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디자인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디자인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 합의는 乙이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甲의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그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②	X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③	X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3항).
	④	O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확정된 심결을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⑤	X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 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 2757 판결).
14 (⑤)	①	O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특허법 제180조 제2항).
	②	O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79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특허법 제179조 제2항).
	③	O	특허법 제178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④	O	특허법 제183조
	⑤	X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한다(특허법 제180조 제4항).
15 (④)	①	O	법원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8조 제1항).
	②	O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

			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③	O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특허법 제164조 제3항).
	④	X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특허법 제188조의2).
	⑤	O	무효심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심리범위는 무제한설에 따른다. 따라서 선행기술 B에 의하여 청구항 1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청구항 2에 대해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16 (5)	①	O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②	O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③	O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은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민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아니하므로, 2024. 5. 1.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O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특허법 제186조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5항).
	⑤	X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17 (2)	①	O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특허법 제201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201조 제3항).
	②	X	국제출원서는 국어번역문 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 참고).
	③	O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93조 제1항).
	④	○	특허법 제203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203조 제4항).
	⑤	○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94조 제3항).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194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94조 제4항).
18 (③)	ㄱ	○	특허법 제227조
	ㄴ	○	특허법 제226조 제1항
	ㄷ	○	특허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ㄹ	X	비밀누설죄는 양벌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 제230조).
19 (④)	①	○	사관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 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 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특허법 제63조의3).
	②	○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특 허법 제53조 제6항).
	③	○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 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특허법 제56조 제2항).
	④	X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판단시점 소급효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 원의 출원일부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56조 제3항).
20 (②)	ㄱ	○	특허법 제65조 제1항, 제2항
	ㄴ	○	특허법 제64조 제2항 제1호
	ㄷ	○	심사청구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2024. 4. 1.)부터 3개월은 2024. 7. 1. 이고,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2023. 6. 1.)부터 1년 2개월 은 2024. 8. 1. 이다. 그 중 빠른날인 2024. 7. 1. 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X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乙은 2023. 9. 1. 부터 실시사업을 하였고, 甲의 특허 출원 Y의 판단시점은 2023. 6. 1.로 소급된다. 따라서 2023. 6. 1. 기준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 중인 사정이 없으므로 乙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1 (①)	①	X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동일성 영역에서의 직접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유사영역에서의 침해만 규정하고 있다.
	②	O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③	O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④	O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⑤	O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22 (③)	①	X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X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O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④	X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X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3 (3)	①	O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②	O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 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 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③	X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그 명칭이 단순히 문화재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사례로는 “불국사” 가 있다(상표심사기준).
	④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⑤	O	
24 (4)	①	X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즉 법정 손해배상청구는 “동일영역”의 침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유사영역”의 침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②	X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을 손상” 시키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11조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X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행사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111조 제1항), 이를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④	O	상표법 제111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2항).
	⑤	X	상표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상표법 제112조). 이는 고의를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것이다.
25 (①)	①	X	“공존동시에 의한 상표등록”은 “유사상표공존제도”를 말하는 것이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괄호, 상표법 제35조 제6항 괄호). 따라서 위 제도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O	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③	O	지정상품 전부는 물론 일부만에 대해서도 공존동시가 가능하다(상표 심사기준).
	④	O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상표공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O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은 표장의 특성 상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등 상표 공존동시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존동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표 심사기준).
26 (②)	①	O	상표법상 ‘상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상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②	X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③	O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④	O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⑤	O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후599 판결).
27 (①)	①	O	[상표법 제236조]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X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상표법 제2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X	거짓 행위의 죄(상표법 제23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X	위증죄(상표법 제23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X	거짓행위죄(상표법 제23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②)	ㄱ	X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상표법 제85조 제2항).
	ㄴ	O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

			표법 제99조 제3항).
	ㄷ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상표법 제106조 제1항).
	ㄹ	×	심판장은 상표법 제117조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17조 제5항).
29 (4)	①	○	[상표법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②	○	상표법 제12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표법 제124조 제4항).
	③	○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상표법 제146조 제1항 전문).
	④	×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표법 제148조 제1항).
	⑤	○	상표법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25조 제1항).
30 (5)	①	×	상표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상표법 제162조 제2항).
	②	×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③	×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④	X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자백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O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
31 (2)	①	O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②	X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③	O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10조 제1호).
	④	O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디자인보호법 제26조).
	⑤	O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5조).
32 (5)	①	O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54조 제1항).
	②	O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54조 제2항).
	③	O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57조 제3항).

	④	O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57조 제1항).
	⑤	X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 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디자인보호법 제57조 제2항).
33 (⑤)	①	O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6항).
	②	O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5조 제2항).
	③	O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5조 제3항).
	④	O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⑤	X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34 (②)	①	O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제1호).
	②	X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③	O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④	○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제2호).
	⑤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2)	①	X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것은 아니다.
	②	○	디자인보호법 제42조는 직권재심사사유에서 제외된다(디자인보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③	X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 제6호).
	④	X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본문).
	⑤	X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3항). 한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4항).
36 (4)	ㄱ	○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3항).
	ㄴ	X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ㄷ	X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2항).
	ㄹ	○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항 제2호).
	ㅁ	X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면제한다(디자인보호법 제86조 제1항).
37 (①)	①	○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디자인보호법 제112조).
	②	X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09조).
	③	X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7조 제6항).
	④	X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1조 제2항).
	⑤	X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디자인보호법 제110조).
38 (④)	①	X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②	X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제5항).
	③	X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57조 제1항).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

			결을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57조 제2항).
	④	O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 제1항).
	⑤	X	심판관이 디자인보호법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41조).
39 (2)	①	O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후10012 판결).
	②	X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도, 출원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는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자유기술의 항변에 해당한다.
	③	O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④	O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⑤	O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그리고 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0 (3)	①	O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 제1항).
	②	O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184조).
	③	X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99조 제2항).
	④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
	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204조).

2026년 1차 대비 - 법과목 기본강의 패키지

★★★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 민법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과목	강사	수강료
민법	김동진 교수	1,300,000
특허법	김영남 변리사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김영남 변리사 김웅 변리사 이준권 변리사 (中 1명 선택)	

[강좌소개]

아래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1. 민법 : 기본강의
2. 특허법 : 기본강의
3. 상표법 : 기본강의
4. 디자인보호법 : 기본강의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과목	강사	수강료
특허법	김영남 변리사	800,000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김영남 변리사 김웅 변리사 이준권 변리사 (中 1명 선택)	

[강좌소개]

아래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1. 특허법 : 기본강의
2. 상표법 : 기본강의
3. 디자인보호법 : 기본강의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2026년 1차 대비 – 산업재산권법 All - Pass

★★★ [산업재산권법 All-Pass]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과목	강사	수강료
특허법	김영남 변리사	950,000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김웅 변리사	

[강좌소개]

아래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1. 특허법 : 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2. 상표법 : 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3. 디자인보호법 : 기본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산업재산권법 All-Pass]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과목	강사	수강료
특허법	김영남 변리사	800,000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강좌소개]

아래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1. 특허법 : 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2. 상표법 : 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3. 디자인보호법 : 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2026년 1차 대비 - 산업재산권법 T-Pass

김영남 변리사 T-pass

과목	[1차] T-PASS	[1차+2차] T-PASS
산재법 T-PASS	900,000	1,500,000
특허법 T-PASS	600,000	800,000
상표법 T-PASS	600,000	800,000
디자인보호법 T-PASS	300,000	400,000

[강좌소개]

2025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력 Test
1월	기본 강의 (30회)			
2월		기본 강의 (20회)	기본 강의 (10회)	
3월	중급 강의 (10회)			
4월		중급 강의 (10회)		
5월			중급 강의 (4회)	
6월	기출 강의 (10회)	기출 강의 (8회)	기출 강의 (8회)	
7월	산업재산권법상표 비교 (4회)			모의 고사 제 1회
8월	2차 시험 선행학습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남 변리사와 1:1 상담후 결정			모의 고사 제 2회
9월				모의 고사 제 3회
10월				모의 고사 제 4회
11월	최종 정리 (3회)	최종 정리 (3회)	최종 정리 (2회)	모의 고사 제 5회
12월				모의 고사 제 6회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2026년 대비 - 변리사 1차 종합반

★★★ 2026년 변리사시험 대비 - 1차 종합반 ★★★

구분		수강료
전과목 종합반	프리미엄	4,200,000
	스탠다드	3,300,000
산업재산권법 종합반	IP -Study	1,500,000

[강좌소개] - 김영남 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멘토링 종합반

1. 전과목 종합반 - 프리미엄

변리사 1차시험 모든 과정 수강가능

[수강문의] 1544 -3383

[수강신청] 월비스 변리사학원

[김영남 변리사 학습상담] 카톡ID - KYN54

2. 전과목 종합반 - 스탠다드

중급강의를 제외하고, 변리사 1차시험 모든 과정 수강가능

3. 산업재산권법 전문 종합반 - IP Study

산업재산권법 1차, 2차 강의 모두 수강가능(김영남 변리사 강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법	기본강의						중급강의		문제풀이			최종 정리
특허법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 정리	
상표법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 정리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정리	
물리			기본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 정리
화학					기본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 정리
생물					기본강의			중급 강의			문제 풀이	최종 정리
지구 과학						기본 강의				핵심 정리 문제 풀이		